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관광지등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시·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관광진흥법(법률 제17399호, '20.6.9. 공포, '20.12.1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(안 제43조의2)

- 1)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과의 관계
- 2)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
- 3) 권역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등

나.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(안 제45조의2)

- 1)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지정·고시된 지역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규정
 - 상기 허가 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 수렴 의무 규정

- 2)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
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의견조회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사전검토 전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 중 “권역별 관광개발계획”을 “권역별 관광개발계획(이하 “권역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2 및 제4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

권역계획이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과의 관계
2.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
3. 권역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
4. 그밖에 권역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45조의2(행위 등의 제한)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으로

지정·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로 한다.

1. 건축물의 건축 등: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
2. 공작물의 설치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)의 설치
3. 토지의 형질변경: 절토(切土)·성토(盛土)·정지(整地)·포장(鋪裝)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
4. 토석(土石)의 채취: 흙·모래·자갈·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. 다만,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.
5. 토지 분할
6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: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회 이상 쌓아놓는 행위
7. 죽목(竹木)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
 -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‘사업시행자’라 한다)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관광지등의 지정·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3.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(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)

제4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“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한다.

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<u>권역별 관광개발계획</u> 은 5년마다 수립한다.	제42조(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 <u>권역별 관광개발계획(이하 “권역계획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43조의2(<u>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</u>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<u>권역계획이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하는 <u>권역계획 수립지침</u>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<u>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과의 관계</u> 2. <u>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 절차</u> 3. <u>권역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</u> 4. 그밖에 권역계획 수립과 관

<신 설>

런하여 필요한 사항

제45조의2(행위 등의 제한) ① 법
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
등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에서
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
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로
한다.

1. 건축물의 건축 등: 「건축
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
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
다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
변경

2. 공작물의 설치: 인공을 가하
여 제작한 시설물(「건축법」
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
물은 제외한다)의 설치

3. 토지의 형질변경: 절토(切土)
· 성토(盛土)·정지(整地)·
포장(鋪裝) 등의 방법으로 토
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
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
매립

4. 토석(土石)의 채취: 흙·모래
·자갈·바위 등의 토석을 채

취하는 행위. 다만, 토지의 형
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
제3호에 따른다.

5. 토지 분할

6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: 이동
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회 이
상 쌓아놓는 행위

7. 죽목(竹木)을 베어내거나 심
는 행위

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
를 할 때 법 제54조제1항에 따
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
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
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
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하
다. 이하 ‘사업시행자’라 한다)
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
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
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관광지등
의 지정·고시가 있는 날부터 3
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
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

제47조(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)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~ 5. (생략) 6. <u>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</u>	<u>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1. <u>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u> 2. <u>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</u> 3. <u>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(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)</u> 제47조(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사업시행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-

다)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. 다만, 양도·양수, 분할,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② <u>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</u> 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	② <u>사업시행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0조의2(준공검사) ① (생략)	제50조의2(준공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(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감정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감정</u>

<u>평가업자</u>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 출내역서를 포함한다) 4. ~ 6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	<u>평가법인등</u>-----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	
연 락 처	(02) 203 - 2892